

2019년 9월 10일 발행인·편집인 : 이용섭·김용승 발행처 : (우)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(치평동) 전화 (062) 613-6343 팩스 (062)613-6219

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19-138호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평동준공업지역 일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청 투자통상과, 광산구청 도시계획과, 부동산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9. 9. 11.

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

□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

가. 대상지역

구 분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	광산구 지족동, 송촌동, 용동 일부지역	1,395,553	준공업·생산농지·자연 농지지역 일대

나. 제한사유

- 대상지역은 평동1차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 일부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(제조업소 등)이 입주함에 따라 정주환경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마을주민의 집단이주 요청 등 고질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
- 대상지 전체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·체계적 개발을 도모코자 단지조성공사의 추진에 저해되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

다. 제한대상행위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채취, 토지분할,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등의 허가사항
- 단, 다음 각호의 행위는 제외한다.

<허가할 수 있는 행위>

1.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고시의 시행일 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
2.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
3. 지반의 붕괴 그밖에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·옹벽 및 사방시설,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
4.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
5.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
6. 조사설계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·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제한사유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
7. 그 밖에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목적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

라. 개발행위 제한기간 : 고시일로부터 3년간 (2년 이내의 기간동안 한차례 연장할 수 있음)

마.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: 게재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